

의안번호	제379호
의결 연월일	2023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4일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9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4일
발의자 : 박진희,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된 상위법률의 제명과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함
(안 제2조)

다.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3개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개년 계획)와 동일하게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상위법률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과 범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마.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23.7.)에 근거하여 현행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요건을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10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의2부터 제1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의약국 바이오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관 등의”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육성 및”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충북의”를 “충청북도 의료산업의 진흥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이하 “첨복단지”라 한다)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첨복단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말한다.(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를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 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첨복단지”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내외” 를 각각 “국내외”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첨복단지”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로 한다.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시책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술·투자·인력 지원 방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2.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지원

3. 법 제11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첨복단지의” 를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로,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로, “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 로, “설치한다” 를 “둔다”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능)” 을 “(위원회의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첨복단지”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로, “지원 종합계획” 을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첨복단지 입주 기관” 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과 입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등)” 을 “(위원회의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를 “위원장 및” 으로, “포함한” 을 “포함하여”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를 “구성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도지사가 다음” 으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를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관련” 을 “소속”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기관·단체” 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중 “때 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를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로,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 을 “(수당 및 여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를 “수당 및”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의 제목 “(연구개발사업 지원)” 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복단지”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로, “입주기관” 을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예산의 범위안” 을 “사업을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해” 를 “위하여”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재단에 대한 지원)” 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 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으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 을 “경비를 예산의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 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으로, “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입주기관 지원)” 을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복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 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훈련보조금” 을 “교육훈련보조금의”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을 “지원” 으로 한다.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제16조의 제목 “(재정지원의 중단 등)” 을 “(지원결정의 취소)” 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사후관리)” 를 “(사업의 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을 “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으로, “보고하게” 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기관” 을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으로, “받 아야” 를 “받아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준용)” 을 “(적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 <u>육성및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u>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에 <u>입주</u> <u>하는 국내·외 기관 등의 지원</u> <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u> <u>적으로 조성하여 충북의 발전에</u> <u>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이하 “<u>첨복단지</u>”라 한다)란 <u>의료</u> <u>연구개발의 활성화</u>와 <u>연구</u> <u>성과의 상품화</u>를 촉진하기 위 하여 「<u>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u> <u>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 다.</p> <p>2. “<u>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u>” 이란 <u>법</u> 제11조에 따라 설립</p>	<p><u>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 <u>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u> <u>적 조성</u>과 <u>입주의료연구개발기</u> <u>관 등의 육성 및 -----</u> <u>충청북도 의료산업의 진흥과 -</u> ----- -----.</p> <p>제2조(정의) ① ----- -----.</p> <p>1. -----<u>란</u> <u>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u>----- ----- ----- -- 「<u>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u> <u>에 관한 특별법</u>」----- ----- ----- --.</p> <p>2. ----- -----</p>

된 첨복단지 지원 기관을 말한다.(이하 “재단”이라 한다)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첨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 말
한다.

3. “신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

제4조(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복단지 비전 제시
2. 국·내외 첨단의료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국·내외 첨단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첨복단지 입주기관 육성시책
5. 첨복단지 입주기관 자금·기술·인력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복단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육성사업) ① 도지사가 첨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입주기관의 육성
2.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동물 실험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3. 신물질, 신의약품과 의료기기

② -----

--.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2. 국내외 -----

3. 국내외 -----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시책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술·투자·인력 지원 방안
6.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지 -----

제5조(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2.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지원
3. 법 제11조제6항의 각 호에 따

융합제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첩보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우수인력·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첩보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첩보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첩보단지 육성 및 지원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첩보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위원회-----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및 -- -----
3.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 관련 실·국장
2. (생략)
3. 입주기관·단체의 임원
4. 기타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 및 --
----- 포함하여 -----
----- 구성한다.

② ----- 도지사가 다음 ----
----- 사람 중에서 임
명하거나 -----

--.

1. ----- 소속 -----
2. (현행과 같음)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
4. 그 밖에 -----

----- 사람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첩보단지 지원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로 해산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
-----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

<삭 제>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

-----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첨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재단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
----- 수당 및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 사업을 예산의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위
하여 -----

제14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①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경비를 예산의 범위-----.

②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입주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첨복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2. 3. (생략)
4.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5. (생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 소속 공무원-----.
제15조(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 -----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
-----.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2. 3. (현행과 같음)
4. ----- 교육훈련보조금의 -----
--
5. (현행과 같음)
6. -----
----- 지원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주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제17조(사업의 점검) ① -----
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

-----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
----. <후단 삭제>

② ----- 입주의
료연구개발기관-----
----- 받아야 -----

-----.

<삭 제>

제18조(적용) -----

----- 「충청
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따른다.

<삭 제>

관계법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10.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6. 1. 6.>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7. 삭제 <2017. 10. 24.>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약사법 [시행 2023.7.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생략)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 14.(생략)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1. 첨부제의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사 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진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